

제400회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2년11월17일(목)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0)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0)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0)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0)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1)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7)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1)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6)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0)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0)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1)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2)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6)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7)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5)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1)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8)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8)
1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7)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6)
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7)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0)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2)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2)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1)
2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488)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5)
3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1)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3)
3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6)
3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2)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5)

상정된 안건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1) 3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6) ... 3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0) 3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0) ... 3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1) 3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2) ... 3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6) ... 3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7) 3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5) ... 4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1) ... 4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8) ... 4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8) ... 4
1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7) ... 4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6) ... 4
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 ... 4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7) 4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0) ... 4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4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2) 4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2) 4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1) 4
2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488) 4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45) 15

3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	15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1)	15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3)	15
3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6)	15
3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15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2)	15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5)	15
3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	20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0)	25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0)	25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0)	26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0)	26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1)	26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7)	26

(10시17분 개의)

○소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무조정실 소관 6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2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8건 등 총 36건의 법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안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한 다음에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에 동일한 제명의 개정법률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 일괄하여 대안

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31)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556)
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0)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0)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1)
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2)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6)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67)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75)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31)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48)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38)
1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7)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56)
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6)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57)
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60)
2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7)
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522)
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92)
2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1)
2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의안번호 2115488)

○소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7번 및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의사일정 제7·8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관련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공유 요구 등의 업무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으로 서일준 의원안, 정부 제출안, 2

건이 유사한 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률안 개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소비자 분쟁 등의 원인 파악, 필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자료 3쪽 대비표를 보시면 정부안에서는 자료제출 등의 대상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수범자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시행일과 관련해 서일준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정부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윤 부위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이것 관련해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서일준 의원님 안하고 저희 정부안하고 차이점 두 가지인데 그중의 한 가지인 자료제출 대상기관 관련해 가지고 서일준 의원안은 기관·단체라고 돼 있는데 정부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기관·법인·단체 이렇게 대상 범위를 좀 더 명료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시행일 관련해서는 서일준 의원님 안처럼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1년으로 앞당기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혹시……

○최승재 위원 정부 의견대로 자료제출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정부가 수용한다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 위원 지자체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그런 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지자체 요구에 따른 법안이다? 예.

○**소위원장 윤한홍**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지자체에 이런 권한을 부여하게 됐을 때 권한이 경합되거나 충돌되는 거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충돌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지자체에서 이런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치 관련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를 시정조치를 직접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시정권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만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다 해 가지고 충돌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소병철 위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권한이 조금 적은 편인데 한계가 있으니까.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견해가 다른 경우 없을까요? 자료 검색하고 그다음에 다음 조치를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권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자가 수용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어떤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공정위 그다음에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병철 위원**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시정권고를 했는데 공정위에서 봤을 때는 시정권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견해가 달랐을 때. 똑같은 일에 대해서 중첩적인 권한을 가질 때는 그 권한이, 서로 의견이 일치된다는 법이 꼭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텐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지금 현행법상 지자체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도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및 감독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관련되는 내용에 따라서 협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보고는 글자 그대로 일방적인 행위잖아요. 보고를 할 뿐인데, 방금 협의라는 말씀을 두 번째 하셨는데 모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공정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시정권고할 때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조사, 확인, 자료제출 요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에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런……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 조항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저는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국가 이양사무로 이미 정부 의사결정이 있던 이런 사무들인가 보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그렇게 원래 일괄 입법으로 추진이 되다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추진해라 이렇게 추진 방식이 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별개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송석준 위원**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실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양사무나 이관사무는 적극 발굴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개정안은 물품 등에 대하여 국가가 정해야 하는 표시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부품보유에 대한 기준 미비로 부품이 없어 수리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조문상 품질보증기간과 유효기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유기간, 유효기간 순으로 조문을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저희 정부 측 의견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알권리 증진을 위한 법 개정 상당히 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좋습니다.

토론이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동일한 제목의 법률안이 제25항입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25항을 처리할 때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0번부터 12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자료 2쪽입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법, 3건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위법성 여부 등 확인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사 후 제재 조치가 완료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어 분쟁조정도 오히려 용이해진 상황이고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 절차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미 제재 조치 완료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9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대리점거래법 개정안은 발의 당시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서 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날짜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공포 후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부칙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좋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시행일을 당초 특정일로 했다가 이렇게 바로 즉시 공포한 날로부터 하는데 업무 집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없습니다. 이게 발의될 당시에는 대리점법이 시행 전이라서 그렇게 시행일을 대리점법이 달리 정했던 건데 지금 이미 대리점법이 시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일 관련해서 전혀 문제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동일 제목의 법률안이 지금 13·14·21·22·23·26항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이상 2건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공정 13번, 1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현재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표준계약서 수요자들이 표준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제·개정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계약서의 현실 적합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좋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발의안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것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동일한 제목 법률안 22항, 23항, 26항과 함께 나중에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4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공정 15번부터 18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공정거래법 4건 개정안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윤관석 의원안은 현재 예규에 근거해 운영 중인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인 제도의 운영 근거 등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CP 제도 운영을 내실화, 활성화하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5쪽 이용우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상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방지하기 위한 조치 대상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인데 개정안은 여기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발주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 경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한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법상 공기업을 공공기관으로 개정하여 공기업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이정문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진적 근거와 자료제출요구권을 법률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업무 담당자에 대한 비밀엄

수의무 부과와 형벌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동의의결 신청 시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처분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오기형 의원안입니다.

현행법상 동의의결 절차 진행 및 이행 기간 중 본 사건 처분시효가 계속 진행되어 동의의결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또는 동의의결 이행 중에 본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동의의결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들과 달리 표시·광고법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어 처분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표시·광고법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정부 의견은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 위원 공정거래조정원한테 자꾸 이렇게 많은 업무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정조치 이행관리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동의의결 이행관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래서 실제 위탁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대해서도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 관련해서는 일단은 조정원에서 이행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지금 당장 추가로 확보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예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조정원의 현행 인력을 좀 조정을 해서요 근거가 마련이 되면 시정조치 이행점검에 투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 법 개정이 되고 나면 또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인력도 추가로 확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창현 위원** 공정위에서 감독을 하는 범위하고 조정원이 처리하는 것과고의 분업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 분장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손을 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동의의결 이행관리 관련해서도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공정거래조정원보고 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행관리 관련된 어떤 기준이라든가 지침 같은 것 저희가 당연히 마련을 해서 주고, 다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점검 업무만 조정원에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치 이행점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정조치 이행점검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마련해서 줄 거고 그다음에 보고도 받고 관리 감독도 하고 다 할 겁니다. 다만 아주 세부적인 사항 그런 집행만 조정원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공정거래조정원 인력이 어떻게 되지요? 그 결정 사항은 대부분 다 비상근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조정원 인력이 지금 한 100명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분쟁조정 같은 경우에 조정원 내의 실무 인력들이 자료 검토라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 최종적인 조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의 아주 일부는 조정원 내의 그런 간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비상근……

○**양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그런데 이것은 시정조치 이행점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상근 임원들이 관여할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기존의 조정원 인력 중의 일부가 이행점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업무입니다.

○**양정숙 위원** 비상근 회의 한번 소집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원들 시간도 서로 안 맞고 해 가지고 계속 적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시정조치 이행점검보다는 기존의 공정거래조정원의 본연의 임무인 분쟁조정 관련해서 어떤 최종적인 분쟁조정을 하는 데 조정원의 일부 간부랑 그다음에 말씀하신 외부 비상근 임원들이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시정조치 이행점검은 그런 비상근 임원님들이 참여해서 결정하신다기보다는 조정원의 내부 직원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라서 그런 말씀하신, 크게 우려하실 바는 없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최승재 위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우려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 있겠지만 지난번에 국감 때나 상임위 때도 동의의결 관련해서 이행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해 오게 돼 있는데 사실 예산도 안 만들어 놓고 해 갖고 미비한 점 계속 지적받고 있었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이행점검 관련된 부분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 그다음에 또 논의되겠지만 의결 절차, 처분시효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어쨌든 업무에 관련돼 분업화시키는 것까지는 실무 업무를 시키는 건 좋은데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게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다는 거지요? 말씀 그렇게 하신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동의의결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정조치 이행점검도 통과가 되면 시행령이라든가 고시라든가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행점검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마련해 가지고요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최승재 위원** 최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부 다 갖고 이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으

시면 동 법률안은 토론 종결하고 동일한 제목의 법률안이 20항에 있습니다. 나중에 일괄해서 같이 의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정 19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요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공정거래법의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과의 법체계 일관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준용 시에 같은 법 제90조제3항 단서의 조문 중에 제124조부터 127조까지의 규정, 벌칙 규정들입니다. 이 규정들은 표시·광고법에서 대응되는 제17조 및 제18조로 보도록 하는 후단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재 위원 준용 규정을 서로 비슷하게 해 갖고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준용 관련된 부분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사실상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최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다른 위원님들 토론 없으시면 동 법률안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공정 20번부터 25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2쪽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분쟁조정 중에 일방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 또는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수소법원이 조정 신청된 사건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 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도입은 사업자의 분쟁조정 방해 목적의 소 제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분쟁조정 결과를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기간만큼 소비자 피해구제 기간이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20년 법안소위에서 소비자기본법 심사 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의 조정 절차의 중지는 소송 결과와 조정에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우려를 방지하고 관련 분쟁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약관법의 경우에는 소 제기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분쟁조정 신청 불가 사유를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중에서도 하도급법에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분쟁 조정법 같은 경우에 지금 발의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최승재 위원님.

○최승재 위원 분쟁조정 절차가 중소기업·소비자들이 피해구제 받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또 지금 한 대로 개정 후에도 법원이 판단해서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니까 소송 지연을 막는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피해구제가 용이하다 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분쟁조정 시간이라든지 절차나 이것들이, 이렇게 되면 법원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분쟁조정이 많아질 수가 있고 또 분쟁 절차에 대한 기간이 자칫하면 늘어져 버리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쟁조정은 평균적으로 한 60일 내에 다 종결이 됩니다, 그게 성립이 되든 성립이 안 되든. 그렇게 하고 또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90일까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90일 내에는 다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 90일로 인해 가지고, 소송까지 포함해서요, 분쟁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이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에 이것 관련해 가지고 법원의 판단이 제약받아서 안 된다는 의견이었었는데 지금 소송을 중지할지 말지는 여전히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법원에서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동 법률안에 대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6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일괄하여 의결하고 나머지 심사가 끝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25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3항, 제23항, 이상 3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21항, 이상 2건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그리고 제20항, 이상 5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공정 2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보복조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지난 법안소위에서 벌칙 강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오른편의 ‘소위 심사내용’을 보시면 별책 인상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고발 사례가 1건도 없는 상황에서 별책 조항 상향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4쪽 아래쪽 ‘보복조치 금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하도급법에 따른 고발이 한 번 있었고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고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법안소위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건들이 있다고 하여 확인 결과 조사받은 건이 4건, 이 중 1건은 주의 촉구를 받은 바도 있다고 합니다. 이 점 고려하여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정부 측 의견은 발의안 내용대로 보복조치이기 때문에 보복조치에 대한 별책을 상향하는, 그래서 이게 상향이 되면 공정거래법하고 같은 별칙으로 됩니다. 성격이 공정거래법상 보복조치랑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발의안대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 위원 2년 이하, 1억 5000만 원도 그렇게 작은 게 아닌데 굳이 이것을 올리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숫자만 맞춰 놓으면 그게 더 편하다 그런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막 올리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도 이런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자는 법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가진 실익이 뭔지를 잘 모르겠고, 지금 1건도 없다는데 뜬금없이 왜 이것을 올려야 되는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이렇게 동의하셔도 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들이 동일한 시기에 제·개정이 안 되고 다 따로따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성격상 지금 공정거래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의 보복조치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은 피심인들, 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든가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공정거래법과 조치 수준 같은 것을 맞추는 것이 더 형평에……

○윤창현 위원 그러면 공정거래법을 낮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높여 가지고 조정해야 돼요? 공정위에서 이렇게 막 올리는 것을 쉽게 동의하셔도 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그런데 그 사이에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복조치가 대리점법이나 가맹사업법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유통이 그런 분야다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가맹하고 대리점법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가맹·유통보다는 대규모유통업 쪽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별책을 부과하는 게 형평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나……

○윤창현 위원 적용레도 없고 실익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올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걸 건드려야 되는지, 오히려 올라가 있는 걸 내리는 것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소위원장 윤한홍 소병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부위원장님, 윤창현 위원님 지적이 십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않아요. 사실 이 행위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의 질이않아요.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이 그 부분 말씀이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서.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보복조치하는 건 말하자면 강력범죄에서 피해자들한테 보복조치하는 것하고 행위의 기본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무슨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신고했다든지 불만 제기했다든지 이런 사람을 보복한다는 이 행위의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맞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똑같은 행위 태양인데 공정거래법으로 가면 지금 형량이 올라가고 더 엄벌해야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형벌이 낮고, 이걸 사실 지금 형벌 별칙의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그게 발

의안의 취지고 일단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소병철 위원 다만 윤창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벌칙을 가지고 자꾸 엄벌 위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오히려 형평을 맞춘다면 공정거래위원회법을 낮추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일리 말씀은 있지요. 있는데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보복조치는, 지금 대규모유통업자라고 써 놓으니까 무색 투명하게 보이는데 대규모유통업자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면 어떤 것을 예시로 드릴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대규모유통업자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쿠팡처럼 온라인 유통이라 할지라도 매장이 라든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 그런……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아마 윤창현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형량을 올린다고 그럴 때 자유형의 경우에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에 1억 5000이란 벌금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제재 효과가 있겠는지, 오랫동안 형벌 법규를 다뤄 본 저로서도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대규모유통업자들에게 견제 효과가 있겠는지.

부위원장님,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사실 유통업자들에게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2억 원도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더 한다면, 이게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왕 이렇게 의견이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원래 하자면 저는 벌금형을 병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체형을 자유형을 자꾸 남용하는 것은 윤 위원님 말씀처럼 그건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지거든요. 그런데 보복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재산형을 엄격하게 가중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미 개정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실제 예를 운용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견제 효과가 없다면 재산형을 병과하는 개정안도 공정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알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다른 위원님 토론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공정거래법하고 대규모유통업법하고 행위 주체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백화점 등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의 행정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규모유통업자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받고 아니면 공정거래법 적용받고 그렇게 보셔도 큰 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애초 법이 형평성상 같이 맞춰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지요? 제가 지난 회의록도 보니까 이게 작년도에도 법안소위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실질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 처벌을 받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없는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아직까지 처벌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효과보다는 공정거래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법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올라온 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형평성 맞추고 예방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걸 기대하는 차원에서 올라온 겁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여기 입법례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뒤에 4페이지에 참고로 나오듯이 비슷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개별법마다 벌금액이 차이가 있고 처벌 형량도 다르다 보니까 형평성에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다양하시니까 벌금형을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징역형의 경우에도 서로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조정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처리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오늘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 법률안에 대

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의사일정 제11항, 제14항, 제22항, 이상 3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공정 27번·2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현준** 목차에서와 같이 다섯 가지 검토사항이 있는데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신고에 대해서 처리기간 명시 규정과 신고의 기산점 정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에 대해서 윤준병 의원안 및 정부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사항 변경, 지위 승계 등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일정 기간 내에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준병 의원안은 여기에 더하여 신고기간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정부안은 신고 수리 간주규정 대신 신고 수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 간주규정의 경우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결격사유가 있는 신고까지 수리될 수 있다는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위승계 신고의 기산점 정비에 대해서는 두 안이 같은 내용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양도일 등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그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위승계의 효과 발생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신고 수리 간주규정 여부 등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고 논의 결정 후에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윤준병 의원님 발의안하고 정부안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수리 신고 간주규정 관련해 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수리 신고 간주규정 관련해 가지고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 번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수리 신고 간주를 하는 규정을 두게 되면, 지금 이게 신고라고는 하는데 이 신고는 우리 통상적인 어떤 형식적으로 신고만 받으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신고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신고는 사업자가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실체적인 심사도 요구되는 그런 신고입니다, 용어는 신고라고 돼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리 신고 간주를 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있는 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격 없는 사업자가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시 법사위에서 그런 쟁점이 있어서 처리가 안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안은 그런 내용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부 제출안과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다음 항목 또 설명 듣고 일괄 토론하시지요.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곽현준** 12쪽입니다.

이후 네 가지 사항은 다 정부안 내용인데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요건 중 위반행위의 반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반복으로 구체화·명확화한 것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며 기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자본금 요건, 자본금 15억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시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하고

추후 자본금 감자 등으로 자본금 등록 요건을 회피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5쪽 신설 규정입니다.

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선수금액, 납입 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통지의무 위반 시 시정 조치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조서비스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중장년층이고 계약 기간이 비교적 장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 부여 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 규정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 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등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결손처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안 상정 시 대체토론 때 감사인이 허위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제재조항 유무를 묻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외부감사법에 보다 엄중한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즉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 취지상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25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조사불출석 등 과태료 기준 현황표를 보시면 현행 할부거래법상 과태료 상한은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시 각각 1000만 원으로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상 같은 위반 행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동일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맞추고 선불식 할부업자가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토론 말씀……

○최승재 위원 정부 측의 관련된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부 측 안에 대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부위원장님, 신고라고 해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신고 내용은 다른 법령에서 말하는 신고와는 차별이 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예.

○송석준 위원 이런 유형의 신고들이 다른 법률에도 좀 있나요, 아니면 이 법에만 독특하게 이런 신고 사항이 있는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다른 법률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특정하기는 그런데요 전문위원 자료 3페이지 보시면 법제처에서도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류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할부거래법이 아주 독특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송석준 위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구분이 돼 있다 이거지요? 이게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정 용어입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이것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해석을 이렇게 한 거로……

○**송석준 위원** 그래서 실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이상 2건의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회의장 정리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안성욱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745)

3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

3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1)

3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3)

3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6676)

3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42)

3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682)

3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895)

(11시15분)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 31항까지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권익 29번, 30번, 31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자료 2쪽입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3건의 개정안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퇴직공직자의 경우라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신고보상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려는 각 개정안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을 퇴직공직자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개정안들과 같이 ‘공직자였던 자’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4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국민권익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익위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듯이 법 적용 대상을 각 3건의 개정안은 공직자와 퇴직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직자와 공직자였던 자로 수정하는 그 의견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제30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 먼저 의결하고 29항, 31항은 동일한 법률안이 뒤에 있으므로 나중에 같이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권익 3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이정문 의원안은 보·포상금 지급 사유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보상금·포상금 지급 사유 확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등 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의 지급 사유와 대상을 맞춘 것으로 각 신고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에 필요해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자료 3쪽을 보시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대상 적용 조항에 있어서 기존 지자체를 공공기관으로 개정하되 안 제26조제6항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하는 대상은 각급 행정기관과 국회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에 한정되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괄호 부분을 넣어 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안 29조 보상금 환수대상 범위에 마찬가지로 ‘이하 이 항 및 제29조에서 같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긴급상황 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급 주체가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 결정 절차가 필요하여 구조금 지급 지연으로 실효성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주체를 위원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에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전체 안은 보상금·포상금 지급 사유 확대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 간소화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하고 내용을 맞추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은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 위원 긴급구조금이 나가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이, 만일 그 액수가 적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지급 사실은 저희가 긴급구조금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신청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산되거나 정리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면 다시 또 환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행령 같은 데서 보완을 잘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저희가 법 개정이 되면 시행령에 그런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잘 좀 담아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한홍 또 다른 토론.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혹시 지급 공익신고·부패신고

통계 갖고 있는 분 누가 계신가요? 지난해 1년간 발생한 공익신고·부패신고 건수 혹시 실무자 누가 통계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심사보호국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심사보호국장이……

○송석준 위원 나중에 그 자료 하나 좀 제출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심사보호국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위원회로 접수된 신고는 전체적으로 한 1만 2000~3000건 정도로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통계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토론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도 수용하시지요, 시행령 좀 조정하면?

○윤창현 위원 예.

○소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31항 및 제32항, 이상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권익 3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헌법 및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위원은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 또는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권익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부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및 성격과 입법부의 견제 기능 강화 차원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부위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타 법 사례는 2쪽과 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토론 있으십니까?

○최승재 위원 지금 현재 권익위원장, 부위원장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하고 그것 관련된 얘기 하고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최승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윤창현 위원 혹시 인권위나 교육위는 아닌데 권익위가 그동안 왜 아니었던 건지에 대한 이유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그 법 자체가 출범할 때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아마 그때 그런 부분까지 법에 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인권위도 정부위원이 아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인권위는 지금 인권위 개별법에 정부위원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지정이 안 돼 있다고 나오는데, 인권위가?

○전문위원 박현준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통위나 공정위처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면서 미지정되어 있고, 인권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인권위법 개별법에서 인권위를 만들면서 정부위원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 출석이나 의견 진술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만 국회 출석 의무가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사실상 출석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 인권위는 개별법에 있고 권익위는 아무 데도 없다?

○전문위원 박현준 예.

○윤창현 위원 조직법에는 있어요, 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박현준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합의제 기관으로 만들어졌지만 정부위원 지정은 다른 방통위나 공정위나 금융위 같은 장관급 위원장들과 달리 권익위는 빠져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냥 여태까지 온 거예요?

○**전문위원 박현준** 예.

○**소위원장 윤한홍**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도 이걸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당연히 그리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윤창현 위원님 토론하신 것 중에, 이게 원래 왜 빠졌는지 권익위는 알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제가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추정컨대 저희 권익위가 오래전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때 기본법 만들 때 아마 그런 부분까지,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약간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법 내용에 그런 것까지 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방송위원장,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정부조직법에 안 들어 있고 각각 개별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현준** 정부위원 지정은 개별법에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나 공정위나 금융위는 정부조직법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소위원장 윤한홍** 조직법에?

○**최승재 위원** 정부조직법에 있는 것도 있고 개별법에 있는 것도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소위원장 윤한홍** 만약에 그렇다면 개별법에 들어가는 것하고 정부조직법에 들어가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문위원 박현준** 위원장님, 시작 자체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근거를 뒀다는 거고요. 정부위원 지정은 금융위나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다, 3쪽 보시면 금융위법·방송위법·원안위법 이렇게 각 개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개정해서 가는 것이 균형이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주세요.

전문위원 말이 맞습니까? 금융위원장·방송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다 개별법에 돼 있습니까, 정부조직법에 돼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제

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상으로는 국무조정실하고 각부 장관 관 그리고 처·청 이렇게 돼 있고요. 금융위법이나 방송위법이나 원안위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각 개별법에 정부위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없어도 불편한 게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법률을 보니까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불편한 것보다 저희가 법상 정부위원이 아니다 보면 국회 출석 의무나 답변 의무……

○**소위원장 윤한홍**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부조직법을 관장하는 데가 행정안전부 아닙니까? 행정안전부 의견을 전문위원이 수렴해서, 우리가 24일인가 제2소위가 다시 있으니까 그날 다시 한 번 더 올려 주세요. 행정안전부 의견을 한번 수렴해 주세요.

양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양정숙 위원** 부위원장님, 정부위원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의 사이에서 어떤 역할에 차이가 좀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저희가 법안심사나 예산심의에 참여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있기 때문에 정부위원이나 아니나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개별법에 없는, 예산이나 법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회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운주** 기초실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저희가 출석이 가능한데 이게 없음으로 해서, 본회의에는 현재 금융위하고 공정위하고 방통위는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참석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권위나 이런 데는 개별법에 들어 있지만 실제로 본회의는 참석 안 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법에 의해서 조직이 설립돼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소위원장 윤한홍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권익위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2008년에 통합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15년 됐잖아. 그러면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이제……

국회에서 법을 냈으니 행안부에도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총괄 부처 의견을 들어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임윤주 부패방지위원회가 2000년도에 설립된 때하고 고충위 설립 때 개별법에 처음부터 그 조항이 안 들어 있었던 게 계속 지금까지 온 내력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권익 3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현준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명백히 부적합하거나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욕설·비방 등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가 보정요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절차 진행에 행정력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인정됩니다만, 당사자인 피청구인의 판단으로 답변서 미제출을 결정하면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각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양 당사자의 대등한 대심구조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또 위원회의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등 청구인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 취지상 청구인 보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법안 의결 시 3쪽 조문대비표에서처럼 안

제24조제2항 신설로 각 항이 이동된 것을 반영한 인용 조항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권익위에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심판에까지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 의무를 주는 것 자체가 행정력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개정안 자체가 수용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행정심판에서 대심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행정심판제도 운영 자체가, 청구가 됐을 때 그 청구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청구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정명령을 해서 청구 취지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그런 우려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전체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 명백하다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명백하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참, 그것도 주관성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이런 사례는, 집단적으로 같은 행정심판을 한 1000건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사실 이런 것에 있어서 찬성 의견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락을 해서 취지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보정명령을 하도록 돼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보정명령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행정심판국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문제 되는 고질적 심판 현황……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창현 위원** 경험법칙상 이렇게 명백하게……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국장 민성심** 한 10% 정도로 보입니다.

○**윤창현 위원** 10%?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국장 민성심** 예.

○**소위원장 윤한홍** 양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심판청구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구인에게 보정명령을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할 때는 보정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양정숙 위원** 권익위에서 판단은 하실 텐데 개인 한 사람이 이걸 판단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익위 내의 어떤 결정을 할 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심판사건이 배당이 되면 행심위원들이 지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실무자들 도움받아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행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토론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70)

(11시40분)

○**소위원장 윤한홍**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30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까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원안 의결이 맞습

니다.

원안 의결로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권익 35번 및 3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현준** 2건 개정안 중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요건 완화는 윤두현 의원안으로 신분보장 요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일시정지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두 가지를 삭제하고 불이익조치 일시정지 기간을 현행 최대 45일에서 조치결정이 있을 때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일시정지 기간 연장은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이전까지 신고자 보호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하며 현행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이 까다로워 신고자 보호를 위해 요건 완화가 필요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 기만 하면 절차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어 회피·기피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4쪽의 2번 사항과 8쪽의 3번 사항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법 제62조의6에서는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조치 미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먼저 윤두현 의원안은 국민권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언론사 등에 신고자의 신분공개 우려가 있는 기사나 정보의 삭제·게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두터운 신고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관련 정보나 기사 등의 범위가 넓어 명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권익위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취재·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시 4쪽으로 와서 홍성국 의원안 말씀드리면

현행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면서 미이행자 명단 공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이행강제금 말씀을 드리면 이행강제금 상한 기준의 대폭 상향은 제도의 이행력 및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이행력 제고라는 목적과 타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명단 공표 내용은 8쪽에 있습니다.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미이행자 명단 공표는 조치결정의 조속한 이행 촉구 및 미이행 사례 방지를 통해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신고자 색출 금지와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확인 조사 범위 확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신고자 색출 금지 규정은 홍성국 의원안으로 현행법상 신고자를 직접 공개·보도한 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으나 신고자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직접 보도·공개하는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것을 요구 또는 지시하는 행위 유형이 다양함에도 이를 모두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현행법상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시 그 원인과 경과 등을 조사하여 고발·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조사 거부 경우 제재 수단이 미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홍성국 의원안, 윤두현 의원안 모두 비밀보장의무 위반 조사 시 조사대상 범위를 접수 기관 외 신고자, 참고인, 관계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윤두현 의원안은 관계기관·단체·기업 등으로 부과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홍성국 의원안은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요청을 받은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신분공개경위 확인에 관한 부칙에 있어서

15쪽 대비표에서와 같이 윤두현 의원안은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한 경우부터로, 홍성국 의원안은 부칙 4조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신분공개경위 확인 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적용례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윤두현 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지에 의한 부패행위 조사·수사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협조자는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신고 내용의 감사·수사·조사에 조력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패신고가 선행되지 않으면 협조자로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인지에 의한 조사·수사와 신고에 의한 조사·수사에 조력한 사람 모두 동등한 정도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 완화 관련입니다.

불이익 절차 일시정지 요건이 현행법은 세 가지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62조의5에 세 가지 요건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 요건을 삭제하고 완화해서 신분보장 조치결정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를 하면 45일 기간을 정해서 잠정적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윤두현 의원안은 그런 45일 기간을 없애서 신분보장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에 따른 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분보장 조치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어서, 저희 권익위에서는 신분보장,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신고인을 보호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용 의견입니다.

아까 입법조사관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복적인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신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불이익 절차의 회피·기피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에 그런 내용을 뒀서, 예를 들어서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자체가 각하 사유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 조치 절차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공개 시 기사 게재 중단 근거 신설 안에 대해서는 권익위도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관련 정보나 기사’라고 범조문에 돼 있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넓고 또 명확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법 해석상 관련 정보나 기사 등은 신고자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권익위 입장에서는 법 명확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또 전체적으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신고자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신분이 공개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사 게재 중단이나 또 이행강제금 부과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국 의원안에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법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상향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듯이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미이행 시 미이행자에 대한 이름이나 위반 내용 등 명단 공표를 통해서 조치결정의 이행 촉구나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또 신고자 색출 금지, 비밀보장의무 관련 확인 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홍성국·윤두현 의원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수용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고자 색출 금지 관련해서 현행법은 신고자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또 신고자를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입법 공백 상태가 있기 때문에 홍성국 의원님의 개정안에

따라서 이 부분도 제재의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 색출 금지의 제재 유형으로 담아내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대검찰청에서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것을 요구·지시하는 행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제지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 법 시행 과정에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유형들이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검의 우려와 달리 저희 제도가 그렇게 운영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비밀보장의무 관련 확인 조사 범위 확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관련 조사에 대해서 저희 법상에는 불이익조치자나 참고인,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이나 진술 청취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현행법은 비밀보장의무 조사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으로만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관련 조사와 달리 불이익조치자나 참고인 이런 데에서는 조사 대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관련 조사와 같이 조사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조사 거부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해서 윤두현 의원님 안하고 홍성국 의원안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에 따른 조사의 과태료 부과 대상처럼, 홍성국 의원안이 같은 내용입니다. 신고자,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단체·기업 등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또 신분공개경위 확인에 따른 부칙과 관련해서도 윤두현 의원안하고 홍성국 의원안이 다릅니다. 윤두현 의원안처럼 법 시행 이후 자료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에 의한 부패행위 조사·수사 협조자 보호 관련해서도 현행법은 신고에 따른 협조자만 저희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지에 대한 조사·수사인 경우에도 동일한 보호가 필요하다기 때문에 인지에 의한 조사·수사나 신고에 의한 조사·수사인 경우에도 그 협조자를 보호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님.

○윤창현 위원 자료 11쪽에 보면 각 개정안에 따른 처벌조항에서 윤두현 의원안과 홍성국 의원안에서 ‘신고자 색출 행위’라고 하는 게 홍성국 의원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윤창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은 어떻습니까, 신고자 색출 행위에 대한 현행 조항?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출 행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법 공백으로 돼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입법이 공백이에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제재할 수 있는 대상도……

○윤창현 위원 대상이 아예 아납니까,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윤창현 위원 그래서 색출 금지는 홍성국 의원안에서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현 위원 이런 행위가 있습니까, 밝혀진 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아무래도 각 기관에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위의 상급자가 은밀하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누가 신고했는지 찾아보라고 하는 경우가……

○윤창현 위원 권익위가 인지를 한 케이스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여러 보호 신청 들어올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계세요, 아니면 뭔가 다르게 접근하고 계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저희가 그게 안건으로 분과위에 올라올 때 그것을 어찌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공범 이론을 적용해서 무리하게 해서 같이 제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홍성국 의원안처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명확하게 들어가면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윤창현 위원 현재도 꽤 있다, 그런 케이스가?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아마 대부분 위의 지시에 따라서 신고자 색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그리고 지금 과태료는 그렇다고 치지만 형벌은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세긴 세네.

○소위원장 윤한홍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부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김종민 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의 신고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미투 사건 같은 것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김종민 위원 미투 사건 모르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신고를 했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신고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 있잖아요. 제도도 그런 쪽으로 설계가 되고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입법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공익신고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되지 못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추세인 건데 이렇다 보면 공익신고라고 하는 제도를 빌려서 허위의 사실이거나 무고의 사실, 무고에 해당되는 내용 아니면 명백한 허위나 무고는 아니더라도 무책임한 신고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보호 아래 조금 더 조장될 가능성 또는 걸러지지 못할 가능성 같은 게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하면 이 제도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미투 사건도 유럽에서 보니까 피해자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보도하다 가해자가 뭔가 공격을 받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가해자의 반격에 의해서 무고라든가 아니면 허위라든가 아니면 무책임한 신고라든가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 제기 자체가 신뢰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흐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우리가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제도의 임무이긴 한데 신고의 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마련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점에 대해서 권익위가 그동안의 활동을 놓고 보면 신고의 문제점 이런 것들의 문제 제기도 하고 또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신고가 허위이거나 아니면 부실하거나 무책임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점검해 낼 수 있는 제도 장치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제도 중에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지금 일단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심사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고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거 관계나 이런 걸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만 무고나 음해성 또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심사 부서에 사건이 배정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걸러 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분과위나 필요한 경우 전원위에 올라가는데, 분과위에 3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전직 판사 출신도 있고 여러 위원들이 참여하시는데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필터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물론 무고성, 음해성 또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여러 가지 신고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제재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 권익위 자체가 신고자 보호기관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무 사례를 보면 피신고인 쪽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든지 그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서 무고로 고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은 검찰에 고소·고발을 해야 그게 다뤄지는 거지요? 심사 내용을 거르는 것은 지금 제도 안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피신고자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고소·고발을 해서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은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신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검토가 되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는 한데 피신고자가 만약에 무고를 당하거나 음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좀 어려운 그런 기간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경험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제도개선 필요성 같은 건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성욱 심사보호국장이 그런 전체적인 신고 사건을 다루는 부서장인데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심사보호국장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심사보호국장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김기선입니다.

일단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거나 그다음에 공익신고 같은 경우 추가로 금품 요구나 근로관계상 특혜 요구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에서 보호하는 신고가 아니라고 배제하는 조항이 일차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들한테 사건을 송부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신고 요건 중에 증거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한다든지 음해성으로 하는 부분들은 거르는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자 보호 신청 사건을 심사를 할 때도 통상 어떤 신고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가 끝난 사안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설치할 때 근거법이 부패방지법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원래 있었다가 그 부분이 신고를 위촉한다, 왜냐하면 개별법에 없어도 형법상 무고죄나 명예훼손 이런 부분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방지법에 있던 조항이 원래 있다가 삭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위촉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가 된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 조항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일부 있어 왔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처벌조항을 다시 살리는 것은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거고 문제는 운영과정상에서 지금은 심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 심의 절차 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제대로 균형 있게 다뤄지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 어떤 절차상의 보완 필요성은 없는지, 이것은 사실 그걸 해 본 분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투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공익신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에서 다루는 기관이 상당히 엄정하고 균형 있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언젠가는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공익신고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있어 왔다면 지금은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역량도 쌓여 있고 경험도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를 균형 있게 보고 판단해서 누구라도, 피신고자든 신고자든 이의 제기가 안 되는 균형 있는 판단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이런 기관의 임무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차, 운영 과정에서 이런 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점이 지금 얘기한 정도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피신고자 10명 중에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구제가 안 돼요. 그러면 권익위는 약간 눈먼 또는 눈이 어두운 기관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윤한홍** 저도 보니까 조금 더 논의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35항·36항은 계속 심사하는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의사일정 제29항은 토론을 마치고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권익위 소관 법률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욱 부위원장님과 권익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과 정부측 의견은 쟁점 위주로 또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0)

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30)

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20)

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0)

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1)

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7)

○**소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항부터 6항까지 6건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자료 국정 1번부터 6번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보시면 개정안은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용기·장경태·전재수 의원안의 경우에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윤한홍 의원안은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통합안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 정부 측하고 입법조사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통합안대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여기 보면 여러 법안에 ‘청년발전’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청년발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청년발전이 뭘 의미하고 일단 법문의 국어적인 자연스러움 측면에서 합리적인 건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저희 법안에 보면 제3조에 정의 규정으로 이미 청년발전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서 이것을 저희가 통상 쓰는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청년 스스로가 자기개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한다 그런 측면을 복합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보통 발전이라고 하는 게 디벨롭먼트(development), 영어로 디벨롭(develop)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인간을 디벨롭의 대상으로 본다는 게 적절하나, 이게 새로운 신법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이 법에서 청년발전이라고 하는 용어 사용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개정 논의가 필요한 거지만 새로운 법조항이 들어갈 때도 계속 이걸 인용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해 보면, 저는 그 내용을 보면 ‘청년의 삶의 질 개선’ 이게 청년발전의 함의 같아요. 내용적 의미 같습니다. 실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어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청년의 삶의 질 개선.

청년발전은 물론 청년의 자기개발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인 자기개발 행위를 제도나 법률 통해서 어떻게 다루는 영역은 아닐 것 같고, 청년발전이라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어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을 발전의 대상으로 대상화시키는 게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인문적으로 별로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이런 판단도 들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청년의 참여 촉진 그리고 청년의 삶의 질 개선 이게 기본적으로 청년발전 내지는 청년에 대한 지원 이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조금 더 엄밀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법조항으로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청년발전이라는 용어를 논의를 해 보고 기존에 있었던 3조 관련된 조항에서는 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위원님,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이 조문이 또는 이 용어가 법령 전체에 여러 형태로 들어가 있고 해서 여기에서 개정 필요성을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나중에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해서 사전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이것을 자문을 좀 구해야 되는데요. 꼭 법조인들한테만 구하지 마시고 국어학자나 문학 하시는 분들, 언어를 다루시는 분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와 전달됐을 때의 효과 같은 게 있고 또 언어의 정의가 주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거든요. 인간을 발전의 대상이다, 개발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다루게 되는 언어 사용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철학적인 어떤 방향을 또 강화시킬 수가 있

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보릿고개 넘을 시기도 아니고 이제는 인간은 인간답게 또는 인간의 독자적인, 어떤 물질이나 사회나 경제의 발전과는 별개의 인간의 길, 인간의 삶의 개선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고민하고 분리시켜야 될 정도의 국가 수준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제공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현행법에 보면 3조(정의)의 1·2·3·4호는 지금 검토의견 7페이지 보면 생략이 돼 있는데 거기 3조 2호에 청년발전이라는 개념 정의가 있어요. 있는데, 김종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에 의견을 다시 한번 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라구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런데 오늘 여기 검토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나 하위 규정에 위임하는 근거를 두는 것이 좋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지금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겁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던 부분은 첫 번째 이슈, 그러니까 청년시설 용어 정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통합안대로 가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8페이지는 지금 논의를 시작하실……

○소위원장 윤한홍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부터는 전문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일괄해서 설명 듣고 일괄해서 정부 의견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입니다.

개정안은 청년시설, 청년지원기관 등의 설치, 경비 지원 및 운영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논의사항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자체 외

에 국가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청년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세 번째로 청년시설의 위탁 근거 마련 여부, 네 번째로 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다가 둘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범위에 청년단체 외에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을 포함할지 여부하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사업에 대해서 국가 보조 근거를 마련할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와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청년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으나 청년발전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포함시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무조정실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개정안은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서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쪽에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로 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두 번째로 자료요청권을 부여할 것인지, 업무 수행 방식은 위탁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개정안은 청년발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 하는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사 입법례로 여성친화도시가 있고요.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하도록 하고 지정 대상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로 하는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해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윤한홍 의원안은 청년 의무 위촉 위원회 범위를 확대하고 김원이 의원안은 청년 의무 위촉 비율을 위촉 위원의 10분의 3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5쪽 하단 보고드리겠습니다.

표현상 중복의 소지가 있는 조문이 있어서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에 의무 위촉 비율을 30%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과 충청남·북도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장경태 의원안 제3조제1호에서는 청년의 연령 범위 하한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 연령을 변경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이원욱 의원안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5쪽에 국무조정실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현행법 제8조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7조부터 24조까지 청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고용·금융 분야에만 취약계층을 특화 지원하

도록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48쪽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입법례 등을 감안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50쪽입니다.

장경태 의원안은 청년정책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체인 청년특별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현행법상 유사한 내용으로 청년 참여 거버넌스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청년특별회의를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 후에 제도 보완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입니다.

54쪽입니다.

전용기 의원안은 국가·지자체로 하여금 각 시책별로 청년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청년발전지표를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지표 작성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윤한홍 의원안 제29조는 국무총리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공공기관을 포함시키고 관계 중앙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소관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등’을 삭제하고,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대상에 개정안에 따라 수탁기관에 새로이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즉시 시행과 6개월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행령 개정 등 준비 기간이 필

요한 점을 감안해서 공포 후 6개월로 하는 것으로 통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쭉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내용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조별로 끊어서 정리하는 식으로……

○소위원장 윤한홍 아니, 가능하면 이 자료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지금 설명한 이 법률안 심사자료 페이지를 보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8페이지부터 해 주시면 돼요, 앞에는 했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8페이지에 보면 논의사항 1, 2, 3, 4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심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훨씬 빠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의사항 1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정부에서도 이 통합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이미 실무적으로는 제시를 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논의사항 두 번째, 청년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근거를 마련하면 나중에 훨씬 더 운영하는 데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논의사항 2번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조실에서는 이런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깊게 들어가면 실제로는 다른 조항들을 원용을 하면 굳이 이 조항이 없더라도 지원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중복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법령이 아주 이상해지거나 또 직접적인 경비가 추가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위원님들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논의사항 3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로 확대하는 것에 정부도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논의사항 4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별도로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실무적으로 이미 제시를 했고 위원님들도 이런 방향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다시, 잘 안 들렸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청년지원기관은 이미 그 앞의 시설이라든지 청년단체하고 중복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 넣을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8페이지하고 9페이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소위원장 윤한홍 14페이지.

○김종민 위원 일단 그것을 하나씩 토론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내용이 많아서 구간 구간 끊어서 해 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여기에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지적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 청년단체라고 해서 청년 참여 촉진, 청년 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있는데 확대하자는 건데.

지금 현재 청년단체가 몇 개 정도 돼요, 숫자가? 모르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지금 청년시설은 한 218개……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15쪽에 청년단체 등록 현황 있습니다.

○최승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년단체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고 설립·운영 관련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또 위탁까지 한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기여한 법인·단체’ 이렇게 확대시키는 것이 정작 청년단체들의 활동 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왕 말 나온 김에 논의사항 4번 보면, 앞에서 청년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도 했고 내용들이 있는데 개념이 불명확하면 좀 명확하게 하면 될 텐데 청년시설·청년단체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 그래서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부분은, 청년지원기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우선 청년시설하고 단체의 경우에 그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들을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밖에 민간에서도 그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가 직접 해야 될 일 중에 혹시 그런 단체나 시설에다가 어떤 역할을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위탁조항 때문에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 역할을 저희는 오히려 촉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원안대로……

○**최승재 위원** 촉진은 좋은데 도리어 주체가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청년단체들이 이미 어느 정도 있고 청년시설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걸 너무 확대시켜 놓으면 정작 청년단체들의 활동 폭이 줄어드는 부분은 초창기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있으면, 보완책이……

지금은 촉진시키는 것만 생각하시지 정작 실효성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감안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을 해 보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의 일부를 순수 민간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한 중간 정도 영역에 있는 공공기관 성격에 준하는, 다양한 형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기본법에서 그걸 포섭을 안 해 주면 현재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주를 최대한 넓혀 줘서 지자체가 다양한 형식으로, 물론 국가를 포함해서입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최승재 위원** 논의사항 4번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4번 관련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시설과 단체 이 형태 외에 별도로 청년지원기관의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을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에 해당할 만한 어떤 걸 찾지를 못해서, 물론 미리 개념을 만들어 놓고 혹시 나중에 이런 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직은 너무 앞서 나간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걸 좀 보류하고 있다가 실제로 소요가 생기면 다시 반영을 하는 게……

○**최승재 위원** 아니, 청년지원기관이라는 게 지금 상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 그러면 앞에 3번으로 따지면 지자체나 이런 데서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형식이 나오면 그때 가서는 또 그것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청년기관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명시 그런 것 아니라 청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만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부분, 중앙정부는 제도적인 실효성 그다음에 지원 그런 걸 따져서 할 수 있겠지만. 앞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굳이 이걸 실익이 적다, 운영 안 한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아직 청년지원기관에 해당하는 콘셉트이나 개념이나 개별적인 양태를 현재까지는 못 봤다는 의미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나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그 자체는 절대 안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이게 좀 모호하다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청년단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청년들이 직접 활동하는 단체 같은 느낌이고 청년지원기관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 계시더라도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기관을 운영하면서 청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청년단체를 정의를 할 때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청년단체라고 쓰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청년단체는 그 안의 청년들이 직접 회원이 돼서 주체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제가 이런 단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모인. 그런데 지원기관은 꼭 청년들이 모인 기관일 필요는 없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지원기관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런 단어가 쓰일 수 있다고 한

다면, 어차피 이 법 전체가 제가 볼 때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추상성과 모호함이 선언적으로 들어가 있는 법이라면 여기다가 지원기관이라는 거 하나 적어 놓는다고 법의 취지가 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헛갈릴 필요도 없는 거지요. 뒤에 있는 것도 굉장히 선언적인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살려 놓으시면 어때요? 그러고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발굴하시든지, 그래서 굳이 이걸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원래 저희들이 단체의 개념 정의를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단체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접근을 했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꼭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도 운영이나 법 운영상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니까 집어넣고 해당하는 기관이 나오면 그리로 분류를 하시면 되지요.

○김종민 위원 이거를 한번 여쭙볼게요.

일반 청년단체라고 함은 민간단체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주로 민간단체입니다.

○김종민 위원 주로 민간단체를 규정하는 것일 텐데 청년지원기관이라고 굳이 이 법에다가 조항을 넣은 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기관을 마련하는 것을 길을 열어서, 조례를 앞으로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지금 국가나 지자체장이 청년지원 사업이나 각종 기관까지 포함해서 이걸 만드는 조항은 법령 여기저기에 여러 형태로 다 규정은 되어 있고, 따라서 지금 논의 사항 4에 있는 지원기관이 정부가 하는 기관인지 민간이 하는 기관인지 이것도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 보거나 또는 정책적 고민을 깊이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다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의견을 처음에 드렸던 것이고요.

○김종민 위원 자치단체장이 청년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데 다른 법령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중복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굳이 안 해도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런 의견이었는데도 반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 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이 법을 제가 냈는데 총리실에서 검토한 걸 보면 운영 위탁 부분은 청년단체가 아니고 청년단체·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까지 확대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그 이야기는 청년단체가 아닌 단체에도 청년을 위해서 기여하는 법인·단체를 위탁을 확대해 주자 그래 놓고 청년지원기관은 또 빼자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왜 이상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청년지원기관은 청년시설·청년단체가 아니지만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 그러니까 위의 것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 하나는 청년단체가 아니라도 청년단체·청년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단체까지 확대하자 해 놓고 청년지원기관은 또 빼자고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아니요. 지금 시간 끝 사항도 아니고 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최승재 위원님이나 윤창현 위원님이나 김종민 위원님이 그래서 지적한 거라니까요. 앞뒤의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쓸데없이 안 해도 될 검토를 이런 식으로 해 와 가지고 지금 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다 돼 있어서 특별히 법령을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굳이 넣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소위원장 윤한홍 이거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해 온 건데 조문 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전문위원하고 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이 규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안 해도 되고 한데

위의 또 위탁은 청년단체가 아니고 청년단체를 위해서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총리실에서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통합의견은 그리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논의사항 3에서……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요. 또 청년단체 외에도 확대하자고 했잖아요.

○최승재 위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 주는 건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위원장 윤한홍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해서, 이거는 내용을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다음 설명해 주세요. 1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논의사항 1번이 부분도 저희 국조실하고 입법조사처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통합의견을 제출을 해서 ‘기여한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것으로 동의 의견을 이미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논의사항 2, 15쪽입니다.

지자체에 대한 예산 보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청년발전에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동의 의견을 미리 드린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이 조항은 원론적으로는 청년단체 및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행·재정 지원을 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필요한 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청년지원 예산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때 예산소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입법 취지나 입법의 효과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짤 때 입법 근거가 없는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위원님, 지난 예

산 관련해서 논의했던 부분은 이 조항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위탁 관련해서 뒤에 별도로 한번 조항을 심의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종민 위원 몇 조예요, 그거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20쪽에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뒤에 다시 한번 논의하실 거고요. 어차피 여기서도 같이 연결되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면……

여기는 보조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는 형태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고 예산에도 반영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 20쪽? 거기 또 있구나. 그러면 그때 가서 논의할게요. 이건 오케이.

○소위원장 윤한홍 이것은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르게 더 이상 논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20페이지, 정부 측 의견.

○김종민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우선 말씀하신 것 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사전에 미리 제도적 틀을 제대로 정비하고 예산 반영하는 것이 당연히 가장 바람직한 형태고요.

다만 이 청년법이 지금 도입이 되고, 제도를 아직도 만들고 시행해 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정비가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창현 위원 20페이지에도 ‘청년지원기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개정안 내용에.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여기서 청년지원기관의 개념이 나와서,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념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규정할 실익도 없고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서 앞부분에서 삭제했던 겁니다.

○윤창현 위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도 없애야 돼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뒤에 청년지원기관을 없

에는 대신에, 그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수정의견
팔호에 보시면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 이렇게 하면 모두 포괄이 되
거든요.

○**윤창현 위원** 팔호 열고 닫고?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대상은 오히려 확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청년지원기관을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
다.

○**윤창현 위원** 이렇게 하고 수정안으로 그냥 써
버린다, 청년단체 또는 시설 두 가지로?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김종민 위원** 이 문제는 예산소위 때도 여러
번 논란이 됐는데,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
원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향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제일 큰 우려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산소위 때 계속 논란이 됐고 아직도 결
론을 못 맺은 건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우선 이것은 근
거조항을 만드는 부분이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어느 하나 단체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찍는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고 각 지자
체에다 추천 권한 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 일종
의, 사실상 원래 계획은 공모 방식입니다만 이번
예산안에는 전 시도가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일부
시도만 4개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

당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우선
이 4개 지역을 전국 권역 지자체 분포 상황을 봐
서 골고루, 예를 들어서 영호남·수도권 이런 식
으로 균형되게 한 네 군데를 구분을 하고 구체적
인 위탁기관의 선정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
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들에다가
추천 의뢰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경쟁력 있
는 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것 이것을 내부적으로
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민 위원** 시범사업으로 지정한 4개가 어디
어디예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받아서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구
체적인 지역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부적
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본 것으로는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하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권역 간 균형
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겠다 정도까지는 내부적으
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아마 검토사항이 아
니라 필수적으로 그리하셔야 될 거예요. 청년지
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입법안 내신 분들도 여야
가 없어요. 청년단체나 청년을 위해서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여야가 없
는 거예요.

○**김종민 위원** 중앙청년지원센터는 또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지원센터도 아
직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거기는 당연히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
서 응모를 하시도록 하고 그 응모된 단체나 기관
등을 평가를 해서 그중에 가장 우수한 데 하나를
지정하는……

○**김종민 위원** 하나를 하나요, 복수로 하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현재 지금 저희
예산상 계획으로는 중앙 단위는 하나고 그것은
하나의 단위로 가는 것이고. 원래 계획은 시도별
로 하나씩 해서 지역거점을 17개 생각을 했었
는데 현재 예산안에는 4개만 우선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중앙은 따로 안 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중앙 포함하면
5개가 됩니다.

○**김종민 위원** 중앙도 할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중앙 하나, 지역
거점 4개 해서 총 5개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김종민 위원님 걱
정하시는 것은 너무 타당하신 이야기고요. 나중
에 예산하실 때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집
행하겠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
다.

양정숙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차장님께서 권역별 안배를 하시
겠다고 하셨는데 권역별 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시민단체에 집중적
으로 많이 지원이 됐다, 이게 과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여성정책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또 여가부 폐지 문제까지 갔고,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성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전철을 밟지 않도록 권역별 안배뿐만이 아니라 사업 목적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청년 주거정책에 관한 것인지 일자리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정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고서 지원대상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정쟁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 부분은 예산소위를 하실 때하고 전체회의 하실 때 총리실에서 명확하게 의사 표명을 해 주셔야 돼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준비를 명확하게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집행 전에도 어떻게 해서 집행할 것인지 절차에 대해서 소상하게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차장님, 이것을 일단 법안에서 뭘 규정할 것은 아닌데 우리 법안이 예산과 연계되어 있는 거니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얘기하고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편향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한다, 이게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목적별로도 또는 보수·진보나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도록 집행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이 조항이 구현되어야 된다 또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요.

사실 약간 예민한 사안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록 정부가 집행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국회가 입법을 할 때, 이 입법의 취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균형과 편향성의 해소라고 하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으니까 그런 입법 취지가 반영된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을 하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집행 절차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소위원장 윤한홍 방금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체회의 할 때 또는 예결소위에서도 명확하게 총리실에서 입장을 밝히세요, 그런 뜻을.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그 두 가지 포

인트로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

○소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할 때 조정실장이 그 취지하고 뜻을 그대로 밝히도록 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설명하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부 측에서 의견을 해서 마련된 것이고요 통합안대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얘기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 토론 있으십니까?

그러면 29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정부 측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없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항목 32페이지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조세감면 법체계가 조감법에 반영하지 않고는 조세감면 할 수 없도록 선언적으로도 되어 있고 실제 운영도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되면 나중에 기재부 협의라든지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서, 또 여기에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실제 세제 감면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에서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는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실제 실익은 없으면서 나중에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산 당국 내지는 조세 당국하고 마찰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좀 빼고 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혹시……

○윤창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청년지원 단체라고 하는 그 단체의 속성이 법적으로 공공기관인가요, 센터가? 아니면 시민단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 대부분은 시민단체 성격이 강하고요, 민간단체.

○**윤창현 위원** 시민단체 성격이면 사단법인인 경우도 있고 임의단체인 경우도 있잖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대부분 아마 사단법인 형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사단법인이나 임의단체는 세금으로부터는 자유롭거든요, 사실상.

조세특례, 지방세특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든가 영리단체를 전제로 해서 조세 문제가 나오는 건데, 사단법인이나 임의단체는 세금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운 것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순수 공익적인 활동만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에서 자유롭습니다만 대개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 납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떠나서……

○**윤창현 위원** 그런데 빼자는 것은 또 뭐예요, 조세감면.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저희 의견은,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단체나 어떤 기관이 조세 부담 항목이 있을 경우에 이 법에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넣자는 것이 의원 발의안 내용인데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고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조감법에서만 통일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게 현재 국회나 정부가 취하고 있는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 이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게 전용기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낸 법안 내용에 있는 건데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조건 빼야 된다고 하기보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조세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특례조항에 지금 각종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면한다는 것이 다 유형화시켜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상 시설들이 아직은 사업 초기라서 구체

적인 조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추후 이런 것이 분석이 좀 되고 실제 이 조세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필요성이 있으면 이 법이 아닌 조감법에다 반영을 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실제 그분들 조세감면으로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찰만 일으키지 실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 부분은 전용기 의원하고 전재수 의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이것은 여기서 통과해도 법사위 가서 정리가 된다고. 통과가 안 돼.

○**소위원장 윤한홍**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그 쪽 법안을 개정을 해서……

○**김종민 위원** 조세감면법으로 가야지.

○**소위원장 윤한홍** 그분들이 또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소위원장 윤한홍**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청년 의무위촉 위원회 범위 확대 이 부분 정부 측.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이 부분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만……

○**소위원장 윤한홍** 위촉 비율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현재 이미 법령에 의거해 할 수 있도록 법에 반영이 되어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고.

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가령 청년정책을 직접 다루는 위원회는 한 50%, 그런 성격이 가까운 데는 한 20%, 일반적인 위원회는 한 10% 또는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데는 1명 이상 이런 식으로 위원회 유형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다가 30% 이상을 해 버리면 현실적으로 이걸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조항은 저희가 가급적 실제 운영 단계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법에다 박는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10분의 3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저희가 지금 총리 소속 위원회만 해도 한 50여 개가 되는데 거기서 논의하는 게 위원회에 따라서 굉장히 전문적인 사항들이 많고, 그런데 거기에 청년위원들을 30% 이상을 해 버리면 아마 위원 선발하는데도 어렵거니와 이 제도의 취지가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는데, 만일에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할 포지션이 크다면 거기서 더 높게 가면 되지만 나머지 위원회까지 30%를 해 버리면 아마 적임자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 걸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게 지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니에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아닙니다. 아예 제외하는 기관도 삭제하고 30%로 올리자 이렇게 안이 되어 있어서……

○김종민 위원 어떻게? 다시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그러니까 35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내용이 청년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그다음에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가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대로 가게 되면 모든 위원회를 다 위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또 그 비율이 30% 이상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커서 이 조항은 한번 집행을 해 보고 혹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추후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의견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위원회로 돼 있나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자료 38쪽 조문대비표 보시면 김원이 의원안 밑의 15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주로 다루는 위원회만 30% 이상 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위원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그런데 지금 차장님 말씀은 윤한홍 의원님 안하고 믹스가 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종민 위원 그 조항은 김원이 의원안 중심으로 하면 되지 않나?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지금 현재로서 30%는 저희가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김종민 위원 여기 보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할 때, 아까 50%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30% 의무조항이 뭐가 힘들어요? 모든 위원회가 아니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해 놓고 이걸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정해서 문제가 없는, 부작용이 없는 그런 대통령령 규정이 가능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윤창현 위원 20명 위원회다 그러면 6명을 꼭 골라 봐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김종민 위원 어디요?

○윤창현 위원 30%면 20명짜리 위원회면 6명 이상을 꼭 청년으로 해야 되는데 6명을 막아 놓으면 실제로 6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다, 취지는 좋은데.

○김종민 위원 이런 거예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제안을 한다면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청년들이 기성 성인들에 비해서 또는 기성인들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뭔가 전문성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2가 기성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제 위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경험이 약하더라도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을 그렇게 경험이 부족한데 일을 맡긴다, 이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회의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모아져서 어떤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니까, 지금 3분의 2가 기성의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30% 정도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비교우위적인 전문성에서 약할 수도 있다, 이거는 오히려 이런 목소리가 이 위원회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20~30대 청년 세대가 대한민국 국회에 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35%예요. 청년 인구 비율은 35%인데 국회의원 비율은 3%입니다.

왜? 선거구에서 다 1등만 뽑으니까. 나이도 좀

먹고 경험도 있고 그래도 어디서 사업 성공해 봤고 이런 사람들을 뽑게 되니까 청년들이 안 뽑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어떡하나? 인터넷 가 가지고 그냥 ‘헬조선’ 하면서 계속 기성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겁니다.

유럽을 보세요. 유럽을 보면 20%, 30%가 보통입니다. 덴마크는 20~30대 청년이 44%예요. 만약에 차장님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덴마크 같은 나라는 나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경험도 없고 저런 사람이 입법기관의 44%를 차지하나. 덴마크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까?

그 20~30%, 우리로 따지면 한 100명 정도가 국회에 들어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데, 물론 거칠기도 하겠지요. 부족하기도 하겠지요. 나머지 200명의 기성, 안정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서로 융합되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35%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회가.

정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위원회에 특히 청년 문제를 다루는 데 청년들이 30%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 부분적으로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다라고 하는, 35% 청년들의 신뢰가 확보가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는 사실은 행정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은 자꾸 계발을 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유럽도 이거 하느라고 선거법을 다 바꾸어 버린 거 아닙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위원님, 청년들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행법에도……

○소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김종민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전향적인데 저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10분의 3 이상 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그 표현을 고쳐 가지고.

왜냐하면 청년정책만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이 10분의 3이 있어도 되지 않나 싶어요. 나는 굉장히 전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위원장님, 실제 정부도 현행법에 의해서 2개 위원회는 50%를 청년을 위촉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운영하는 방식은 청년정책을 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위원회에 대해서도 최소 1명씩은 넣도록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10% 어떤 때는 20% 이렇게 다양화시켜서 특성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지켜봐 주시고 그럼에도……

○소위원장 윤한홍 아니에요. 그거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김종민 위원 납득이 잘 안 가요, 그게?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가능한 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향적인데? 아주 좋은 안이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라고 조금 넣지요.

○김종민 위원 그런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10분의 3을 하고 그 위원회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한홍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김종민 위원 예, 같은 얘기지요.

○소위원장 윤한홍 예, 그리해도 되지요.

○김종민 위원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10%, 20% 하는 것도, 또는 1명 들어가 있는 것도 선심 쓰듯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전향적으로, 청년 인구가 35%예요. 모든 위원회에 35%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자니까 차장님같이 걱정하시는 기성세대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일보, 반보 정도 나가자 해서 청년정책 다루는 위원회만 10분의 3을 한 건데 이것도 못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조금 고정관념 같은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위원장 윤한홍 예,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41페이지인가요? 청년 연령범위 하향 조정 문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습시다만 청년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 처음 제정 당시에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현행으로 정해졌고 아직 시행 기간이, 연혁이 길지가 않습니다.

또 숫자를 바꾸게 되면 각종 예산 지원 체계라든지 기존에 있던 대책의 형식, 내용 이런 것들이 일제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고, 이거는 어차피 기본법의 성격이 있으니까. 저희가 연령별로 특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종합기본계획이라든지 시책별로 또 보완책을 두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19세로 두고 조금 시행해 본 다음에 내릴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 1년 가지고서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의견을 좀 따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1년 가지고 청년들이 분노하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김종민 위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가 민법으로 갈 거냐 선거법으로 갈 거냐 하는 이런 딜레마 아닙니까, 지금?

선거법에서는 18세 이상을 사실상의 정치적 성인이라고 보고 정치적 주권 행사를 하도록 허용을 해 놓은 것이 최근의 입법인데, 그렇다면 이제 민법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도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건데 아직 민법은 19세고, 이게 딜레마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렇지만 현재 19세를 가지고 대책 설계를 해

서 지금 막 출항을 한 상태인데 또다시 바로 수정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적정한 타이밍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한 가지, 연령을 바꾸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애로사항 예를 한두 가지만 들어 보세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지금 각 부처별로 각종 지원시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 예산이 있고, 또 다른 법령 그러니까 청소년법이나 이런 거에서는 청년법에서 19세로 하고 있으니까 18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 법을 개정을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그런 것까지 다 분석도 안 되어 있고 작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이 된 상태에서 일괄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종민 위원 오케이.

○최승재 위원 저도 말씀 잠깐 드리면 지금도 청소년 관련된 부분이, 청소년 보호법이 상당히 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법보다도 더 셀 정도로 청소년 관련된 법들이 센데.

청년이 19세 미만으로 돼 있고 요새 촉법소년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도 쉽게 잘 바꾸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있고 청년하고 사항이 달라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부안대로 먼저 추진하다가, 선거법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정부안으로 하더라도 좀 더 분석하고 연구해서 다음번 이 논의가 있을 때는 연령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이 부분의 취지는 저희들도 백번 동의를 하고요.

○소위원장 윤한홍 이원욱 의원 법안이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다만 이게 잘 아시다시피 법체계에 보면 청년과 관련해서 주거 이런 각종 유형별로 지원시책을 하도록 또는 할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기본계획에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을 개정해도 무방하고 안 해도 이미 기존 법으로 다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그래도 개정을 하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그냥 기존 법으로 가고 이것은 뺄지 그것만 의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창현 위원 법 자체가 가진 약간 선언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그래서 저는 골고루, 아까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지만 지원기관이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 거기다 써 놓고 다양하게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올리는 그런 법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되도록 여러 가지 것을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법은.

너무 엄격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 위에다가 많은 것을 올릴 수 있는 토대들을 여기저기에다가 깔아 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다양하게 골고루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법은 맞지 않은가. 안 만들면 몰라도 만드는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런 것들도 넣어 놓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나쁜 것 하는 게 아닌데.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저희도 청년정책을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만……

○윤창현 위원 그리고 내년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발전돼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여기저기다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드리구요. 다만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듣는 지적이 취지나 이런 것은 옳아서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체계와 이것을 너무 해치면 안 되지 않느냐, 많이

혼나는 게 있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선언적인 의미에서 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도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다른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저는 정리가 잘된 것 같아요. 이게 다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법제처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

고용·금융 지원의 근거 신설하는 게 단순히 그냥 요새 갑자기 팬데믹 때문에 잠깐 일시적인 거다 그러면 지금 법제처 의견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당한 기간 동안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개별 집행이 아니고 방향에 설정될 정도의 현상으로 흐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특히 고용과 금융 지원 문제는 실제로 새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의 문제, 삶의 질의 핵심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고용·금융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어떤 입법적인 대응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총리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시지요.

48페이지 청년 주간 지정.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청년 주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측에서 이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이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문제가 없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소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청년정책 연구시설 조성 시경비 지원.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원래 기획재정부에서는 가급적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장 이것 때문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법에다가는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청년특별회의 근거 마련.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이 부분 취지는 저희들도 백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본법을 시행하고 각종 청년위원회라든지 분과위, 지역회의 등등을 지금 막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것을 또 집어넣어 버리면 너무 체제가 복잡해져서 우선 해 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보완하는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윤창현 위원 위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관련된 게 있으니까, 이것은 그거랑 같은 것 아니겠어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우선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거버넌스가 확대돼야지 회의도 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생기지 사실 이것만 만들어 놓고 회의 개최가 잘 안 돼 버리면, 거버넌스 확대가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 위원 한 가지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전체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자는 입장은 아닌데 왜 이런 입법 제안이 있는지를, 제안 취지를 고민하시거나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모임이 있고 또 절차가 있기는 한데 특별히 청년특별회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청년의 대표성을 담는 그런 절차가 지금 우리 사회에 뚜렷하지가 않다 이런 취지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단순히 법조항 하나로 만들어서 가는 것으로는 아직은 무르익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이 취지는 의미가 있어요. 즉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냥 원 오브 템(one of them)으로 막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가 청년들한테 별로 전달력이 없고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 중에서 청년들의 의사를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그러한 반영성 혹은 조율성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운영상에서 이 법의 제안 취지를 운영에 꼭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 부분은 총리실 의견으로 가되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소위원장 윤한홍 54페이지.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그다음은 청년발전지표, 25조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관심을 갖고 챙기는 사안이고요. 다만 지금 바로 발전지표까지 작성할 단계까지는 저희가 못 가서,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현재 청년 실태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년간 해 보면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올 텐데요. 이 통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지표화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안을 만드는 데 상당한 연구용역도 필요하고, 정부 쪽에서는 이 취지에 맞게 실제 준비는 들어갈 텐데요. 다만 지금 당장 법에 담으면 시행 시기하고 너무 갭이 커서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있다가 정부에서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법에 반영하는, 이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윤창현 위원 실태조사부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위원 지표 개발은 장기 과제로 놓고 실태조사부터……

○김종민 위원 이것도 저는 같은 의견인데, 일단은 연구조사를 통해서 지표라는 필요성 그다음에 개념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된 결과 위에서 입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발전지표라는 개념을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이 용어에 대한 재정립을 한번 거친 다음에 용역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발전지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법하고는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면 ‘청년 삶의 질 지표’ 이러면 딱 느낌이 전달되지 않나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김종민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런 게 딱 잡히는데, ‘청년발전지표’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지? 데피니션(definition)이 이것을 연구하거나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는 약간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56페이지 위탁 범위 확대 부분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위탁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통합한 의견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위원님들 토론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칙, 공포 후 6개월로 통일한다는 내용인데 이견이 없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지금까지 각 항목별로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항목별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또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큰 이견이 없고 또 여야 의원들이 공히 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종민 위원 아까 예산 관련해서 당부드린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나 후속 조치를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다음 주에 전체회의가 있을 때 총리실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것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가서는 청년정책이 발전이 안 돼요. 그렇게 했으면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김종민 위원 소탐대실이에요.

○소위원장 윤한홍 그렇지요. 그것은 다 공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박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6건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 보고,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정무위원회 직원과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 종 민	박 성 준	소 병 철	송 석 준
양 정 숙	윤 영 덕	윤 창 현	윤 한 홍
최 승 재			

○출장 위원(1인)

강 병 원

○청가 위원(1인)

민 병 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고 상 근
전 문 위 원	곽 현 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박 구 연
청년정책기획관	김 진 남

공정거래위원회

부 위 원 장	윤	수	현
기 획 조 정 관	이	순	미
소 비 자 정 책 국 장	남	동	일
카 르 텔 조 사 국 장	신	동	열
유 통 정 책 관	정	창	욱
심 판 관 리 관	안	병	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사무처장	안	성	욱
기 획 조 정 실 장	임	윤	주
심 사 보 호 국 장	김	기	선
행 정 심 판 국 장	민	성	심